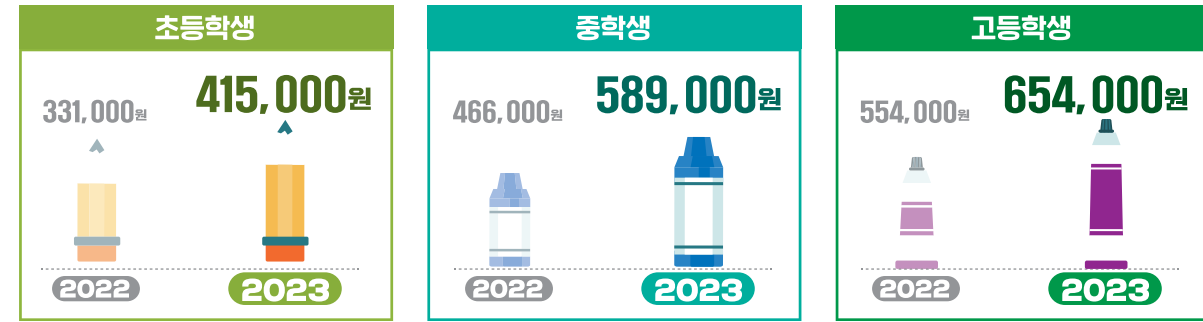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2023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46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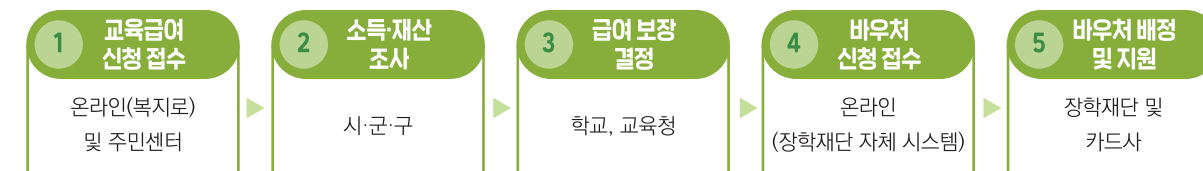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고교 무상 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신청 가능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현금 → 바우처)

-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든 수급권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co.kr)**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처, 사용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Q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종류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최초로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Q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23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neclick.moe.go.kr)

※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없음

Q

왜 교육비 지원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별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아이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누가 신청하나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다만,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 지원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 본인 신청 가능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음

Q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희망시 문자메시지 추가 가능)으로 통지 되고, 교육비 지원은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3.3.2.(목) ~ 3.17.(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 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 내용

교육 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ucher.kosaf.c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무엇이 다른가요?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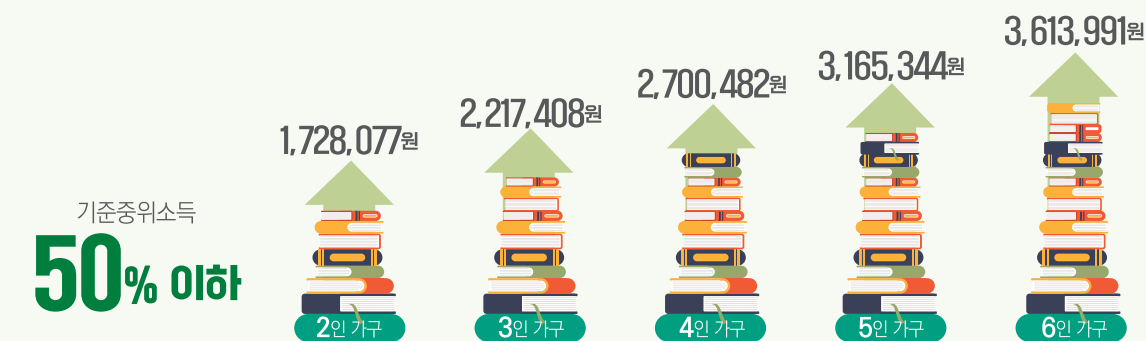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text{소득 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1)}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2)}$$

(1)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2) (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재산 :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지원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법정 차상위 종류

구 분	내 용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포함 가능

교육비 지원 항목별 대상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소득인정액 기준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학교장 추천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선정절차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 (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구 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비 포함)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중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 설치	요금 면제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접속

💡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